

---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모집·선정 공고 별첨

---

# || 목 차 ||

I. 참여대상 및 참여조건 .....	1
II. 사업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항 .....	2
1. 훈련사업 운영 .....	2
2. 훈련과정 편성 .....	2
3. 훈련운영 방식 .....	5
III. 공동훈련센터 지원 내용 .....	5
1. 운영비 .....	9
2. 훈련시설·장비비 .....	11
3. 프로그램 개발비 .....	13
4. 훈련비용 .....	14
IV. 심사 기준 .....	18
V.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22

## [붙임]

1. 4차산업 신기술 분야 및 지역특화산업 .....	24
2. NCS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 예시 .....	27

## 1

## 참여대상 및 참여조건

## □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참여 기준

## ○ 공동훈련센터

참 여 기 준	비 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 폴리텍대학 등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단,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불가

\* 운영규칙 제10조(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제26조(공동훈련센터 지원금의 신청 등) 관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 ○ 파트너훈련기관

참 여 기 준	비 고(공동훈련센터와의 차이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기관 외에 지정직업훈련시설(민간직업훈련기관)까지 포함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동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동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동일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 1. 훈련사업 운영

- 지역·산업계 수요조사에 기반한 훈련과정 설계
  - (목표 인원) 공동훈련센터별 연인원은 최소 600명 이상이 되어야 함
  - (수시 과정) 지역·산업계 수요에 즉각적 대응을 위해 전체 목표 인원의 20% 내외로 계획
    - 인자위와 협의하여 심층 수요조사를 반영한 수시과정 개설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되, 센터별 최소 목표 인원 설정은 없음
- 훈련과정 내실화 및 훈련-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협약기업 비율 설정
  -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은 165개 이상으로 하되,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 기업수요 맞춤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0인 이상 협약기업의 비율은 전체 협약기업의 60% 이상이어야 함

### 2. 훈련과정 편성

- 우선 순위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
  - 지역·산업계 수요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산업·신기술, 반도체, 전략분야, 취약계층 특화과정, 정부 정책 연계과정 등 중점 선정

#### [우선순위 고려사항]

- 1) 해당 지역 과소공급 과정(훈련수요를 반영)
- 2)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지역 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과정
- 3) 취업률(채용예정자), 수료율, 전년도 훈련규모 등 실적을 반영
- 4)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과정, 취약계층(중장년, 경단녀 등) 특화과정
- 5) IT·ICT서비스·SW개발, (정보)통신업, 콘텐츠·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 고품질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단가 추가 지원

- 고숙련·신기술(4차산업\*), 지역특화\*\*, 위기·전략훈련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NCS 수준\*\*\*별 훈련단가 지원을 차등 적용

\*4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은 [p24] 참조 및 \*\*\*NCS 편성 예시 [p27] 참조

-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100 ~ 300%이내 지원

- (NCS 2~5수준) 일반과정 : 100~150% 이내
- (NCS 4수준 이상 and 지역특화·위기·전략산업 과정 : 100~200%이내
- (NCS 5수준 이상 and 신기술·4차산업 훈련 : 100~300% 이내

※ 지역위기·전략훈련의 경우, 해당 지역인사위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 여부 결정

□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선정

- 채용예정자 과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개설 가능

① 채용예정자\_동일·유사 과정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 (1-1) (지산맞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과정 취업률이 70% 이상
- (1-2) (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기관에서 운영한 내일배움 카드제 등 유사훈련과정의 취업률이 70% 이상인 경우

※ 동일유사 과정 기준 NCS 소분류 기준 교과목 내용 및 시간 모두 80% 이상 일치하는 경우

[취업률 산정기준]

-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2020. 07. 01 ~ 2022. 06. 30.)간 해당과정 취업률의 산술평균
- 최근 2년 이내 해당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반영

② 채용예정자\_동일·유사 과정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 (2-1) (타분야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기관별 2개년 채용 예정자 취업률이 70%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
- (2-2)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기관별 1개 과정(1회차, 600시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분야 수요 및 향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 심사 시 채용약정서 제출은 생략하고, 실시 신고 시 확인

- 향후 실시 신고 시 '채용약정서' 및 '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 첨부

□ 현장수요를 반영한 적정 훈련기간 설정

- 훈련 수요조사 결과, 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720시간 이내) 설정

※ 채용예정자 과정은 지역 내 훈련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20시간 초과 과정 일부 허용

-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월 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22년 지원된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 필수 운영

- '22년 지원된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22년도 미운영시 '23년도에는 반드시 운영해야 함

□ 훈련분야 제한

- 경영·회계·사무(NCS 중분류 01~03) 과정은 훈련비 기준단가를 100%로 고정하고, 승인받은 훈련과정 수(회차 기준) 및 훈련인원의 10% 이내로 제한

\* 중장년 ICT 훈련과정 중 경영회계사무에 해당되는 과정은 산정에서 제외

- (공통법정의무교육)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공통법정의무교육' 과정 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 (타 사업 지원 과정) 사업주훈련 등 타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자위가 판단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 중장년 ICT 특화과정 편성

- (훈련대상) 훈련실시일 기준 만 45세 이상 중장년\*

\* 반드시 훈련 시작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상만 해당

- (인원목표) 1,005명('22년 기준, 67개 공동훈련센터 × 15명)

- 개별 공동훈련센터당 최소 15명 이상 훈련 실시

※ 단, 지역 내에서 A공동훈련센터가 B공동훈련센터 훈련물량을 소화할 경우는 B공동훈련센터 훈련 미실시 가능(인자위 승인 필요)

- 정기 향상과정으로 설계하고, 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설계

### 3. 훈련운영 방식

- 기관별 훈련비 쿼터내에서 회차 및 정원 추가 가능
  - (회차 추가) 승인받은 과정에 한하여 연간 3회차까지 추가 가능
  - (정원 추가) 승인받은 회차별 정원의 120%까지 실시신고 가능
- 대면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훈련 활용
  - (대면 집체훈련 원칙) 훈련성과 및 질 제고를 위해 대면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격대체 훈련 허용
  - (쌍방향 훈련 대체) 플랫폼(Zoom, Skype 등)을 활용한 쌍방향 훈련에 한해 집체훈련 대체 허용
    - 집체훈련의 훈련 품질 및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훈련생 및 교·강사에 대한 관리 철저
    - 인프라 기반 구축 및 적용 가능 훈련과정 여부 등 공단 지부·지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3

### 공동훈련센터 지원 내용

- 지원금 지원기준
  -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지원기간별 지원한도액			
				1~6년	7~12년	13년 이후	
인 프 라	운영비	인건비	2억	80%	한도액의 100% (4억)	한도액의 80% <b>(3.2억)</b>	한도액의 80% (3.2억)
		일반운영비	<b>2억</b>	100%			
	프로그램 개발비		<b>1억</b>	100%	한도액의 100% (1억)	한도액의 80% <b>(0.8억)</b>	한도액의 50% (0.5억)
	시설 및 장비비		15억	80%	한도액의 100% (15억)	한도액의 80% (12억)	한도액의 50% (7.5억)
훈련비		실비 심사					

※ 상기 지원기준은 한도와 비율을 설정한 것이며 예산액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 등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의 지원비율이 100%인 기관(대응투자금 면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인프라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사항('22년 하반기 고시 및 규칙 개정 예정)

지원항목		지원기간별 지원한도(7~12년)				변경내역
		변경 전 ( ~ '22)		변경 후 ( '23 ~ )		
운영비	인건비	2억	80% (4억)	2억	80% (3.2억)	-
	일반운영비	1억		2억		1억 증가
프로그램 개발비		2억		1억	80% (0.8억)	1억 감소

※ '23년도 인프라 지원금 예산액이 동결됨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년도 신청규모와 유사한 수준(일반운영비 1억원)으로 신청 요망

□ 훈련실적과 연계하여 인프라지원금 차등 지원

○ 기존 공동훈련센터별 목표 대비 훈련실적을 기준으로 '23년도 인프라 지원금 지원 규모와 연계하여 심사

- 공동훈련센터별 목표 대비 훈련실적 달성 정도, 훈련시설·장비 중복 지원 여부, 예산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이 되는 훈련실적 산정 기간 "2020.10.1. ~ 2022.9.30." (훈련종료일 기준)

□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세부기준

○ (훈련운영) 프로그램 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연도 또는 다음연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반드시 운영해야함

- (지원금 산출) 개정된 규칙에 유의하여 작성
- (심사 주기 조정) 프로그램 개발비는 정기심사 시에만 지원됨  
- '23년부터는 연중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지원 심사는 미 실시

□ **훈련·시설장비비 지원 세부기준**

- **기존 시설·장비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 기지원 시설·장비는 훈련운영과 연계하여 지속적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신청 시에는 기존 지원 인프라와 중복지원 여부 중점 확인
  - ※ 기지원된 시설장비 목록 및 활용현황, 활용계획 등을 '23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자산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
- **훈련시설·장비비 우선지원 기준**
  - 고속련(NCS 5수준 이상), 신기술(4차 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 산업직종(고수준), 프로그램 개발 반영 훈련과정등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를 우선지원하고, 향후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선별 지원
- **전담자용 사무장비 지원**
  - (지원대상) '17년 선정기관 및 이전 선정된 기관 중 전담자 사무장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관
  - (지원한도) 공동훈련센터별 정부지원금 8백만원\* 한도  
\* 대응투자기관은 20% 대응투자(현금)를 전제로 총 1천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연장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연중 별도심사 일정이 없으니 해당기관은 필요 시 정기사업계획 심사에 포함하여 신청

□ 주요 방침

- (노후장비 교체) 기 지원받은 사무장비 중 내용연수 도래하지 않은 장비는 지원 불가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해당 장비가 고장·파손 등으로 인해 활용 불가능한 경우만 교체 지원 가능
- (연장기간 중 1회 지원) 금번 지원받은 경우 연장기간 중에는 추가 지원 불가

□ 세부 내용

- (지원대상) 7년차('17년도 신규선정) 및 전년도 지원대상 중 미신청 기관
- (지원항목) 인프라지원금 → 훈련시설 및 장비비 → 훈련장비비
  - 규정에 의거, 대응투자기관의 경우 총 소요금액(100% 기준) 대비 20% 대응투자(현금) 필수
- (지원한도) 공동훈련센터별 정부지원금 8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구 분	품 목(예시)	비 고
신청(지원) 가능	<p><b>[사무용 전산기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체(데스크톱), 모니터 등</li> <li>· 노트북, 복합기, 프린터 등</li> </ul> <p><b>[사무용 가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등</li> <li>· 사무용 책장 등</li> </ul> <p><b>[사무용 가전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탠드형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스크톱, 모니터, 책상·의자 등 개인별 장비는 정부지원금(인프라지원금-인건비)을 받는 <b>전담자 인원수만큼</b> 신청(지원) 가능함</li> <li>- Windows, 한컴오피스 등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b>본체(데스크톱) 견적서에 SW 구입 추정 가격을 포함하여</b> 제출함</li> <li>· 행정사무용 노트북은 기관별 1대씩 신청(지원) 가능함</li> <li>- Windows, 한컴오피스 등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b>본체(노트북) 견적서에 SW 구입 추정 가격을 포함하여</b> 제출함</li> <li>· 스탠드형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공용품목은 품목당 기관별로 1대씩 신청(지원) 가능함</li> </ul>
신청(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li> <li>· 행정용 사무기기로 볼 수 없는 <b>고사양 전산기기 등(게이밍용 PC 등)</b></li> <li>· 시설공사 등이 수반되는 장비 등 (천장 매립식 에어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 대비 고가이거나, 특수목적 등 행정 사무기기로 볼 수 없는 고사양 품목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li> </ul>

□ 항목별 지원기간에 따른 한도액\_ '22년 하반기 고시개정 예정

- 공동훈련센터 7년차('18년 이전 선정기관) 이상 기관은 지원한도액에 유의

지원 항목	지원기간별 지원 한도액		
	1~6년	7~12년	13년 이후
운영비(4억)	지원 한도액의 100% (4억)	지원 한도액의 80% (3.2억)	지원 한도액의 80% (3.2억)
프로그램 개발비(1억)	지원 한도액의 100% (1억)	지원 한도액의 80% (0.8억)	지원 한도액의 50% (0.5억)
시설 및 장비비(15억)	지원 한도액의 100% (15억)	지원 한도액의 80% (12억)	지원 한도액의 50% (7.5억)

## □ 운영비

### 1.1 전담자 인건비

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인력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① 전담인력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체결 비율이 60% 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인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구 분		전담인력 수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무기 계약 비율	60%	1.8(2)	2.4(2)	3.0(3)	3.6(4)	4.2(4)	4.8(5)	5.4(5)
	70%	2.1(2)	2.8(3)	3.5(4)	4.2(4)	4.9(5)	5.6(6)	6.3(6)
	75%	2.25(2)	3.0(3)	3.75(4)	4.5(5)	5.25(5)	6.0(6)	6.75(7)
	80%	2.4(2)	3.2(3)	4.0(4)	4.8(5)	5.6(6)	6.4(6)	7.2(7)

- ② 전담자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는 4,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의 전담자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③ 공동훈련센터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담자 수는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분		훈련 규모(명)			
연인원	기본 지원	6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500이하	2,500초과~4,000이하	4,000초과~
평균훈련인원		1,200초과~3,600이하	3,600초과~6,200이하	6,200초과~9,600이하	9,600초과~
지원인원	2명	4명 한도	6명 한도	8명 한도	9명 ~

- ④ ③에 따른 훈련 규모는 최근 2년의 훈련실적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원격 훈련의 경우 훈련인원 1명을 0.2명으로 본다. 다만, 신규 공동훈련센터는 목표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2년간의 실적이 없는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연도 실적을 평균 실적으로 산정한다.

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총 인건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간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 ① 전담자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다만, 전담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함)하고 전담자별 인건비는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단 부담금 20% 비율 준수)
- ② 사업연도 중에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1.2 일반운영비

가.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훈련목표 평균 훈련인원 1인당 18,000원씩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훈련생 및 훈련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운영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일반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산맞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 등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비는 1인당 10만원 이내</li> <li>시설임차비는 1회당 400만원 이내</li> <li>※ 훈련기관 자체시설일 경우 지원 제외</li> </ul>
회의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산맞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훈련과정 수요조사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수당</li> <li>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시간 미만 : 10만원 이내</li> <li>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20만원 이내</li> <li>4시간 이상 : 30만원 이내</li> <li>※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 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 불가</li> </ul>
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산맞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한 식비(프로그램 개발 목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3만원 한도</li> <li>일반운영비 지원액의 10% 이내 사용</li> <li>※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의 경우 전일(주일), 평일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li> </ul>
자료인쇄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기업과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li> <li>그 밖의 지산맞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비 인정</li> </ul>
홍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산맞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li> <li>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천만원 한도</li> <li>일반운영비 지원액의 30% 이내</li> <li>※ 기념품 제작비로 집행 불가</li> </ul>
기념품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산맞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과의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회의 등으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답례품 제작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5만원 한도</li> <li>일반운영비 지원액의 5% 이내 사용</li> <li>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li> <li>※ 훈련생에게 지급 불가</li> </ul>

세부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회계정산비	• 지산맞 사업 회계 정산 비용	• 기관당 4백만원 한도
교육훈련비	• 지산맞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교육훈련은 환급비용 및 지원받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인정함	• 기관당 4백만원 한도
출장여비	① 지산맞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장비용(협약기업 방문비용, 프로그램 개발 목적 등) ② 지산맞 사업 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 운영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일반수용비	① 지산맞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② 현수막 제작비용 등 그 밖의 잡비용 ③ 지산맞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 다과비는 1인 5천원 한도 • 현수막 제작비 등 잡비용은 실비 인정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20% 이내 사용
수요조사비	• 지역인자위의 기초·심층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비(용역비 포함)	• 훈련과정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비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사회보험료	•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라.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현금, 상품권, 주류 등 지원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 ②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용품, 전기, 상하수도료, 정보통신비용,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 등의 비용

## □ 훈련시설·장비비

### 1.1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가.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금은 지산맞 사업만을 위하여 설치, 구입 등을 하는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에 투자되는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간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에 대하여는 연간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투자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1.2 시설 및 장비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등

가.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자산맞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다음에 따르며, 훈련시설·장비비의 대응 투자(부담금)는 현금만을 인정한다.

### ①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① 자산맞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강의실, 실습실 등)과 부대·편의시설(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임차(보증금에 한함), 증축(신설 증축 포함),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자산맞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임차(보증금에 한함), 증축(신설 증축 포함),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①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개축·임차·유지·보수비 사용 불가 ② 자산맞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 불가
<b>【공통사항】</b> ①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훈련시설비 중 증·개축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 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②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1. 자산맞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공동훈련센터가 기존 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② 훈련장비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①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원격훈련 등에 필요한 학사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포함한다)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②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 협약기업 관리, 자산맞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자산맞 사업 안내 등 동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전산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③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운행 목적이 아닌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④ 공동훈련센터가 신규 선정된 경우(기관 선정된 연도만 해당한다) 또는 신규 선정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행정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사무장비(각종 OA장비 포함), 냉온풍기 등 편의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① 유류비, 소모성 용품 및 실습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② 자산맞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지만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이외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등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및 의자, 냉온풍기 등 편의장비, 복사기, 팩스 등 각종 OA장비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③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 프로그램 개발비

### 1.1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등

- 가.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100분의 100을 지원하되 연간 총 1억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연도(개발된 해) 또는 다음 연도 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 1.2 프로그램개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등

- 가. 프로그램개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지산맞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①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② 교육과정의 개발 등의 비용 ③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인쇄 등의 비용 (단, 10권 이내의 구입, 인쇄비용만 인정함) ※ 교보재 :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재료(시청각매체 등) ④ 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①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② 전문 교육기관 등에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탁하는 비용 ③ 기존 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와 차별성이 없거나 활용되지 못한 경우 ④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재비 또는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 나. 프로그램개발비에 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전문가수당 (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 1회 1인당 30만원 이내 •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나, 지산맞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인 경우는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 실비 인정
원고료	•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 단,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함	•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준용 (A4 1매당 기준(전자파일 포함)) • 등급 외 인력은 C등급 이내 금액 지급 • 내부전문가일 경우 등급별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나, 지산맞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인 경우는 지급 불가
인쇄비	•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운영기관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	• 실비 인정 ※ 단, 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함

※ 교보재 :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써,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함

※ 프로그램 개발 목적의 출장여비, 매식비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함

다.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금액	40,000원 한도	30,000원 한도	20,000원 한도	15,000원 한도
자격	차관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 (기업체 사장급) 이상	책임연구원급 (연구위원) 이상	선임연구원급 (부연구원) 이상	선임연구원급 (원급) 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정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전문학사취득 후 경력 27년 이상	전문학사취득 후 경력 17년 이상	전문학사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전문학사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 □ 훈련비용(훈련비+숙식비+훈련수당 등)

1. 훈련비용은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훈련비, 식비, 숙박비, 훈련수당, 임금 등을 의미한다.
2.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파트너 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	•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훈련수당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 단위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120시간 미충족 시에는 훈련수당 지급 불가
임금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 사업주 지원규정 제17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식비 또는 숙박비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 식비는 1일 5천원까지, 숙박비는 1일 14천원(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천원)까지 지원

※ 임금(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훈련참여기업에 직접 환급함

3. 훈련비의 지급기준은 사업주 지원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4. '3'의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5. 훈련비를 제외한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은 사업주 지원규정 제17조를 준용하며, 3개월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단위기간별로 훈련비용을 중도 지급할 수 있다.
6.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li> <li>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 항목을 제외한 비용</li> <li>※ 파트너훈련기관은 임차비 지원 불가</li> </ul>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지산맞 훈련 인정과정에 한함</li> <li>② 훈련과정별 강사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li> <li>※ 등급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로 지급 불가</li> <li>•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 가능(다만,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 초과 불가)</li> <li>※ 훈련기관이 신기술(4차 산업 중심)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 이내에서 지원 가능</li> </ul>
강사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li> </ul>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 지원하는 보조인력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지원단가는 사업연도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li> <li>• 훈련과정 회차당 1명까지 지원 가능</li> <li>•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 16시간)까지 지원 가능</li> </ul>
운영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li> <li>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운영자의 출장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li> </ul>
다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일 3천원 한도</li> </ul>
제세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지원</li> </ul>
실습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실습재료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지원</li> <li>※ 단, 프로젝터, 음향시설, 노트북 등 임차료는 불가</li> </ul>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교재구입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 실비지원
재해보험료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 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	• 실비지원
그 밖의 훈련비용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 문구비는 1인 1차수 당 3천원 한도 (다만, 1개월 및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은 1인 1개월당 3천원 한도) •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간접비	• 지산맞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	•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 비용 포함)

7. 강사료 산정을 위한 등급별 강사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금액	20만원(시간당) 한도	15만원(시간당) 한도	10만원(시간당) 한도	7만원(시간당) 한도	5만원(시간당) 한도
자격	차관급이상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6급이하 공무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연구기관임원급 이상	책임연구원급 (연구위원) 이상	선임연구원급 (부연구위원) 이상	선임연구원급 (원급) 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정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15년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9년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4년 이상	박사취득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20년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12년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7년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3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25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5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0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6년 이상	
	전문학사취득후 경력 27년 이상	전문학사취득후 경력 17년 이상	전문학사취득후 경력 12년 이상	전문학사취득후 경력 8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경력 15년 이상	경력 11년 이상	
기업체 사장급(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 위 강사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 ※ 훈련기관이 신기술(4차 산업 중심)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참고】 대응투자 산출방식 및 실시방법

### □ 대응투자 개념도 및 산출 방식

#### ○ 대응투자 개념

- 인건비(100%) = 정부지원금(80%) + 공동훈련센터 대응투자(20%)
- 시설·장비비 총금액(100%) = 정부지원금(80%) + 공동훈련센터 대응투자(20%)
  - \* 인건비 지원한도, 시설·장비비 지원한도(15억원)는 정부지원금 80%에 해당
  - \*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대응투자(20%)는 정부지원금(80%)에 대한 20%가 아니라,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총 소요 금액 기준의 20%를 말함

### □ 대응투자 실시 방법

-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별도 통장에 대응투자를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함
  - \* 공동훈련센터에서 관리하는 통장 : 정부지원금 통장, 공동훈련센터 자체 대응투자 통장
- 공단(지부·지사)에서는 대응투자가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공동훈련센터로부터 제출받아 대응투자 실행여부를 확인 후 정부 지원금 입금

## 4

##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1차 심의·의결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종 선정

## □ 심사 개요

## ○ 심사내용

구분	심사방법
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심사는 현장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 단계</li> <li>-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인프라지원금 신청내역, 훈련과정 내용 등을 전반적인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li> </ul>



현장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심사는 심사위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와 인터뷰 심사 동시 진행</li> <li>- 해당 기관의 훈련인프라, 훈련실적, 훈련역량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채점 실시</li> <li>- 훈련과정 심사 시 사업주훈련 과정 인정 요건 검토(현장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담당자 참여)</li> </ul>
----------	--

## ○ (심사위원) 내용 및 회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단 구성·심사

- 심사위원 풀을 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지역 인자위에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인자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공단이 제공하는 심사위원 풀에서 자산맞사업 심의위원은 제외되며,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

## 【심사위원 자격요건】

-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자격을 갖춘 사람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자위에서 인정하는 사람
- 대학의 회계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 심사 주요내용

### 신규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선정 기본방침

- 지역 수요, 기존 공동훈련센터 운영현황, 지역별 훈련비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심사를 하되 인자위 내 실무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다소간 조정하여 활용 가능
- 공동훈련센터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관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강화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 기관"은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적정성' 제고 필요

### 공통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사업계획서 심사 세부 기준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의 항목별 준거에 따라 적·부 심사 실시
  - 심사위원간 합의로 결정하며 "부적정이 1개 항목 이상인 경우 선정 제외"
- (훈련인원) 공동훈련센터는 최소 훈련목표 600명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당한 사유(수요감소, 부적정 과정 발생 등)가 있을 경우 전년 대비 훈련목표를 하향하여 심사할 수 있음
  - ※ 전년대비 목표 하향 조정의 경우에는 하향 조정 사유를 지역인자위의 사업계획 심사 결과 보고 시 요약 보고 요망
- (훈련과정) 행정처분 등으로 훈련과정 인정 취소된 과정이 훈련과정 심사를 통과하지 않도록 유의
- (훈련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심사단가\* × 훈련시간 × 수료(계획)인원으로 산정

### [ 훈련비 심사단가 관련 ]

- 심사단가는 사업주 규정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율에 조정되는 경우 실비심사를 통해 단가 산정
- 기준단가대로 신청할 경우, 훈련비 심사 없이 과정 적격 여부만 심사
- 훈련비 지원기준은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훈련과정의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개정된 규칙 [별표5의6\_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유의
- 훈련비용은 선정 심사 시 과정별로 결정하고, 공단 본부의 사업계획 심사 시 최종 확정함

- (공단 지부·지사 참여) 지역인자위 훈련과정 심사 시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가 참여하여 훈련과정 심사와 과정인정 업무와의 연계 및 효율성 제고
- (파트너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에 파트너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파트너훈련기관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 파트너훈련기관 평가표는 별도의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훈련기관 평가 등급 최소기준은 1년 이상 인증받은 기관

### [파트너훈련기관 심사 시 유의사항 ]

-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동시 지원 가능여부
  -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의 중복적 지위 인정은 불가하므로 평가표에 제시된 기준 등을 토대로 해당기관의 역량 등을 판단하여 선정
- 복수의 공동훈련센터에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여부
  - 복수의 공동훈련센터에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단, 사업계획서에 파트너훈련기관 복수 참여 명시 필요)

###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 선정 불가

- 부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 지역인자위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행위나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전 과정 또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다만, 처분경위,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안의 여지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파트너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 과정이 '인정 취소' 또는 '위탁 인정 제한' 등의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유용, 기관 내부 갈등,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 "사회적 물의"에 대한 판단은 지역인자위에서 적의 판단
-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23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파트너훈련기관 포함)

□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

- (심사 항목 조정) 8개 영역, 21개 항목
- 심사기준표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방법
I 기관 운영 (신규만 해당)	기관의 적정성	참여요건 부합	적부
		고용부 훈련기관 평가결과 적합	
		훈련인프라 구축	
	기관의 공공성	기관 경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기관 경영의 안정성 및 재정 건전성	
	사업수행 의지	기관장의 사업수행 의지	
II 사업 운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의 적정성	적부
		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체계 적정성	
		파트너 훈련기관 활용 적정성	
	지역산업 수요반영	지역수요조사 결과와의 연계성	적부
	사업수행역량	훈련 전담 조직 구축	적부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시설·장비의 적정성			
훈련과정개발 역량			
III 훈련 과정	훈련과정의 적정성	지산맞 사업목적 및 지역수요결과 부합	적부
		사업주 훈련의 과정인정 요건 부합	
		채용예정자 과정의 기준 취업률 등 적합성	
		과정설계, 교강사,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연간 실시계획의 적정성	
IV 지원금	신청지원금의 적정성	훈련단가 산출 적정성	심사 시 조정
		정부지원금(인프라) 집행기준 부합성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10.26.(수) 17:00까지

□ 제출서류

○ 사전 제출

- 제출기한 : (기존\*) 10.6(목)까지 (신규) 10.19(수)까지
- \* 기존 : 2022년「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참여중인 기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hrd@ucci.or.kr)
- 제출서류 : 훈련과정 일람표

○ 공모 신청 서류

- 제출기한 : 2022.10.26.(수) 17:00까지
- 제출형식 : USB 저장매체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돈길로 97, 울산상공회의소 1층)
- 제출서류 및 방식 : 각 제출방식에 따라 ①~③ 모두 제출 완료시 접수
- ※ 아래 서류는 울산지역인자위 및 산인공 울산지사에 각 1부씩 제출할 것(별도 접수함)

① 공문 1부 : 원본

- 신청서 원본 및 기관/대표자가 포함된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1부를 포함할 것

② 사업계획서 : USB 저장 및 제본본

- 파일명 : “2023\_지역\_신청기관명\_A권”, “2023\_지역\_신청기관명\_B권”  
(각 권마다 별도로 저장(예시) 2023\_서울\_홍길동대학\_A권.hwp, 2023\_서울\_홍길동대학\_B권.hwp)

구분	포함 내용	비 고
A권	사업계획서 총괄	
B권	훈련과정별 계획서	- HRD-Net에서 전산 출력 활용, A권 훈련과정일람표상의 연번 순서를 준수하며, <b>훈련과정별 간지삽입</b>

※ 본 서류는 심사 전까지 제본본 10부 별도 제출 필요

③ 기타 자료 : USB 저장

- 인프라 지원금 신청내역
- 시설장비 현황 목록
- 훈련비용 신청내역 및 훈련비 단가 세부내역
- 강사 경력산정 근거자료
- 기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6

유의사항

- 훈련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훈련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훈련계획서의 내용은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업 신청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및 매뉴얼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공동훈련센터는 사업계획 작성 시 HRD-Net입력을 병행하고, HRD-Net 입력자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4차산업 신기술 분야)

연번	전략분야	전략제품
1	자율주행차	1 자율주행 바디인테리어 시스템
		2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3 자율주행 정밀지도 시스템
		4 커넥티드카 서비스
		5 자율주행차 상태진단 및 고장 예측
		6 자율주행 평가-개발 장비
2	의료기기	7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8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9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10 뷰티케어 디바이스
		11 치과용 진단 시스템
		12 ICT기반 지능형 영상진단 시스템
3	전기수소차	13수소차 부품 국산화
		14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15 전력공급 및 저장시스템
		16 인휠 모터 시스템
		17 전장시스템
		18 초소형 전기차
4	바이오	19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20 생체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21 분자/면역 진단키트
		22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23 기능성 화장품
		24 단백질 의약품
5	시스템반도체	25 세포 및 조직 치료제
		26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27 보안 솔루션(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28 자율주행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29 헬스케어 기기용 시스템반도체
		30 바이오용 반도체
6	지능형로봇	31 의료기기용 시스템반도체
		32 오디오 시스템 반도체
		33 무선 충전 IC 및 모듈
		34 물류 배송 지능형 로봇
		35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지원 로봇
		36 배달 및 안내 서비스 로봇
7	신재생에너지	37 체험형 시뮬레이터 로봇
		38 살균/방역 지능형 로봇
		39 커뮤니케이션 돌봄 로봇
		40 수술용 의료 로봇
		41 지열 에너지화 활용 냉난방 시스템
		42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43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44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
		45 중소형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46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47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48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연번	전략분야	전략제품
8	서비스플랫폼	49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50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51 비대면 교육 플랫폼
		52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53 O2O 서비스 플랫폼
		54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55 오디오 미디어플랫폼
		56 마이크로모빌리티 플랫폼
9	인공지능	57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58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59 AI 기반 교육서비스
		60 AutoML 솔루션
		61 합성 데이터 (Synthetic Data)
		62 eXplainable AI(XAI)
		63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10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64 Robotics Process Automation(RPA) System
		65 폐기물 고령연료화
		66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67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기술
		68 희토류원소 회수 및 소재화
		69 친환경 합성섬유(바이오매스, 리사이클, 생분해성 섬유)
11	실감형콘텐츠	70 바이오매스 연료화
		71 데이터 스트리밍 미들웨어
		72 입출력처리 미들웨어
		73 실시간 인터랙션 콘텐츠
		74 영상콘텐츠
		75 실감형 콘텐츠 저작도구
		76 모션처리 미들웨어
12	드론	77 운송/배달
		78 재난 모니터링 드론
		79 시설물 안전점검용 드론
		80 UAM(도심항공교통)
13	빅데이터	81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82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인텔리전스 플랫폼
		83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84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85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86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14	블록체인	87 암호자산 기반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88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89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서비스
		90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91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92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15	스마트시티	93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94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95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시스템
		96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에너지 최적화 관리 시스템
		97 스마트 미터(AMI)
		98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정보 시스템
		99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
16	재난안전	100 스마트 건설현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101 자연재난 감시/예측/대응 시스템
		102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103 가정용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연번	전략분야	전략제품
		104 적외선 열하상 비파괴 검사 장치
		105 공장용 환경안전 솔루션
		106 IoT 기반 안전 앱/서비스
17	IoT	107 홈 IoT 헬스케어 가전
		108 스마트홈 방범시스템
		109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110 홈 IoT 반려동물 케어장치
		111 스마트홈 위험상황 대응 시스템
		112 IoT용 스마트센서
18	5G+	113 비대면 응용서비스를 위한 5G 기반 통신시스템
		114 B2B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
		115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대역 활용 시스템
		116 5G 무선통신 테스트 및 계측 장비
		117 5G 기반의 스몰셀 및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19	이차전지	118 양극재
		119 음극재
		120 전해질
		121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
		122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20	스마트제조	123 중소기업용 스마트제조 플랫폼
		124 스마트제조용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125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APS)
		126 Hyper Connected SCM 플랫폼
		127 스마트제조용 보안시스템
		128 스마트 설비관리 시스템
		129 중소기업용 On-Site 엣지 시스템319
		130 자율형 공정 제어 솔루션
		131 디지털트윈 생산시스템
		132 스마트제조용 웨어러블 기기
		133 IoT융합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134 산업용 지능형 센서
		135 무인반송차(AGV)
		136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
137 보급형 스마트팜 솔루션		
138 스마트 축산 솔루션		

**(지역특화산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5조 (<https://k-pass.kr>)

연번	지역	산업분야①	산업분야②	산업분야③	산업분야④
1	서울	-	-	-	-
2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첨단융합 기계부품
3	대구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4	인천	-	-	-	-
5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6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 융합	지능형로봇	바이오메디컬	
7	울산	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 신소재	저탄소에너지
8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9	경기	-	-	-	-
10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11	충북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12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13	전북	스마트농생명 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 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14	전남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 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15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16	경남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17	제주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3수준 편성 예시

객실관리 직종(훈련이수체계)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관촉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객실고객관리 하우스키퍼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관촉 연회 행사 외부업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퍼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텔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 편성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직종이 주(전공)직종이 되며 주(전공)직종이 훈련과정의 수준을 결정하게 됨. 위와 같은 예시는 ‘객실관리’직종이 주(전공)직종이며, 과정편성의 필요한 능력단위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편성이 가능하다.

수준의 경우 선택한 4수준(객실수납, 객실 일일마감, 객실고객관리)의 시수 총 합과 선택한 3수준(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능력단위의 총 합을 비교하여 시수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예: 객실수납 + 객실 일일마감 + 객실고객관리 = 120시간, 체크 인 + 체크 아웃 + 객실 예약접수 = 150시간일 경우 120시간 < 150시간 이므로 해당과정은 3수준)

4수준 편성 예시

객실관리 직종(훈련이수체계)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관측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퍼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관측 연회 행사 외부업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퍼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텔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귀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 객실관리 직종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4수준 음영부분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과정/과목을 편성하고, 이외 유사(타) 직종의 능력단위를 훈련과정에 추가 편성 가능

- 음영부분(■)은 주직종과정, 음영 및 사선처리부분(▨)은 훈련기간(시간)에 따라 유사직종의 능력단위 반영
- (훈련대상자) 숙박시설 객실관리자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시설기획·개발,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직종의 음영색 부분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구직이후에 경력을 쌓은 후에 진로는 5수준과 6수준에 제시된 능력을 함양하며, 숙박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함을 안내

5수준 편성 예시

객실관리 직종(훈련이수체계)

6수준	호텔 기획전략 호텔 프로젝트				
5수준	호텔 인적자원 관리 호텔 교육 호텔 관리회계 호텔 마케팅 호텔 홍보	객실 매출관리	부대업장 손익 관리 식음료 메뉴기획 식음료 직원관리		당직
4수준	호텔 총무 호텔 영업회계 호텔 구매 호텔 관측	객실 수납 객실 일일 마감 재실고객관리 하우스키퍼관리	식음료 고객관리 휘트니스 센터 회원관리	연회 관측 연회 행사 외부업체 관리	GRO
3수준		체크 인 체크 아웃 객실 예약접수 하우스키퍼정비	식음료 업장관리 텔리숍 관리 휘트니스센터 운영	연회 예약 상담 연회 기획 연회 행사 준비 웨딩 출장 연회 연회 행사 정산 연회 행사 사후 관리	고객서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쿠빈층 라운지 컨시어지
2수준		호텔 세탁물관리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음료 서비스	연회 행사 진행	벨 데스크 도어 데스크 발렛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 (훈련과정편성)객실관리 NCS기반 훈련기준의 훈련이수체계에서 5수준에 해당하는 훈련과정/과목을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편성

- 음영부분(■)은 필수과정, 음영 및 사선처리 부분(▨)은 훈련기간(시간)에 따라 유사직종의 능력단위 반영
- (훈련대상자) 객실관리 종사자로서 “객실예약접수, 재실고객관리”등 4수준 이하의 능력단위에 대해 직무경험, 학습경험, 관련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